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39

발의연월일: 2024. 11. 7.

발 의 자:박 정·문금주·홍기원

손명수 · 윤후덕 · 한병도

박홍배 • 천준호 • 이재강

신정훈 · 김성회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제조사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. 이에 따라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하였음. 하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.

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(배터리)가 일정한 기준의 안전성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의6에 따른 구동축전지가 안전성, 제조정보 등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	제10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
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)	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)
(생 략)	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	승)
<u><신 설></u>	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
	경친화적 자동차의 「자동차관
	리법」 제2조제1호의6에 따른
	구동축전지가 안전성, 제조정보
	등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
	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환
	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
	소유자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
	<u>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
	원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	<u> 정한다.</u>